

부산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나608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훈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6.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3046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07. 10.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7. 접수

제327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38367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54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20. 확정되었다.
 - C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와 자녀들인 H, I, 피고, C, G가 있었다.
 -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7.에 2007.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6. 7.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일 무렵인 2007. 10.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한동안 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2017.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문의를 받고 2017. 6. 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여 등기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6. 7.경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일인 2007. 10. 23.경 내지 늦어도 2014년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8.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위와 같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와 달리 망인이 2007. 10. 23. 사망한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2017. 6. 7.경 작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날짜를 2007. 10. 23.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등기신청 시점에 맞추어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서 작성 당시 상속인들의 주소를 기재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는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1970년대부터 소유하면서 망인과 배우자인 F가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위 F가 장남인 H 등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 7.경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J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위 강제경매절차가 취하되도록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년경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 5.경 망인의 건강이 악화될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망인이 2007. 10. 23. 사망할 당시 망인의 둘째 아들인 I은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망인의 사망 직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문제를 상속인 전원이 함께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등 참조), 망인의 막내아들인 G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며칠에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배 들어오는 곳에 큰 형님하고 가서 찾아왔다(증언 녹취서 요지 7/12면), 망인이 사망한 이후 늦어도 2014년경에는 I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위 녹취서 요지 10/12면)’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I은 늦어도 2014년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참여했다고 할 것이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다른 4명의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데에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막내아들인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해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였고,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망인의 장남인 H 역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될 무렵인 2017. 6. 7.경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판결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있었고, 그 원금은 25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될 것을 우려하여 2017. 6. 7.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과 동일하게 다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없었다가 2017. 6.경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문의를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17. 6. 7.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 한편 주식회사 K는 C에 대한 12,679,826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82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07. 10. 23.경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였는데, 2022. 9. 19. 주식회사 K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다.

4.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박나라, 판사 장윤실

별지

목 록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대 37㎡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M

조표 N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5.12㎡, 끝.

